

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의안번호 : 764
- 제안자 : 윤영희 의원(찬성의원 46명)
- 제안일 : 2023년 5월 30일
- 회부일 : 2023년 6월 5일

2. 제안이유

- 북한이탈주민 중 청년의 경우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는 문제, 정체성과 취업과 같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나, 현행 조례상 특별히 배려·지원하도록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.
- 이에 상위법인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때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대상에 “청년”을 추가하여 청년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때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대상에 청년을 추가함.(안 제3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입법예고(2023. 6. 8. ~ 6. 12.) 결과 : 의견 없음.

5. 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특별히 배려·지원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‘청년’을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.(안 제3조제2항)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·<u>청소년</u>·여성·노인·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·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u>청소년</u>· <u>청년</u>----- ----- -----.</p>

- 동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중 청년의 경우 학업과 생계의 병행, 취업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, 특별히 배려·지원해야 하는 대상에 ‘청년’을 추가하여 근거 규정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○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¹⁾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제2항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특별히 배려·지원하는 대상을 ‘아동·청소년·청년·여성·노인·장애인 등’으로 규정하여 ‘청년’을 포함하고 있는 바, 상위 법령에도 부합한다고 하겠음.

※ 정부에서는 2020년 2월 4일 제정된 「청년기본법」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2023년 3월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를 개정하면서 특별배려 대상에 ‘청년’을 추가하여 청년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제공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.

○ 특히, 취업난 및 주거 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특별배려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사료됨.

※ 행정국은 상위법인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조례상 보호대상자로 청년이 추가되어 기존 “청소년”이 “청소년·청년”으로 변경되는 부분으로,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여 조례 개정에도 동의한다는 의견임.

○ 또한, 2023년 3월 행정국에서 개최한 ‘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소통 간담회’에서도 주요 건의사항 중 하나로 청년 취업, 병역관련 사항들이 논의된 바, 청년의 자립은 가족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하여, 중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1)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·교육·취업·주거·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·청소년·청년·여성·노인·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·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〔 청년 관련 주요 건의사항 〕

※ 간담회 세부내용은 참고자료 참조

- 서울시 산하기관에 북한이탈주민 특채 요청
-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의 대기업 인턴근무(방학기간) 및 취직 요청(시범적으로 1~2명)
- 제3국 자녀의 군 문제 대책 필요
 - 국적 취득시 즉시 군입대로 한국어도 미숙한 채 입대하여 부적응 발생

- 다만, 현행 청소년의 범위는 「청소년 기본법」에 따라 9세~24세, 청년의 범위는 「청년기본법」은 ‘19세 이상 34세 이하’로,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에서는 ‘19세 이상 39세 이하’로 하고 있는 바, 청년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살펴보아야 할 것임.
- 또한, 법령 개정에 따라 북한 이탈 청년들이 피부에 와닿는 실효적인 사업 집행의 노력과 생색내기용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- 한편, 북한이탈주민 특별배려 대상 지원 관련 현황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은 바, 행정국은 구체적인 특별배려 대상자 수 및 대상자별 지원사항 등 현황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,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아동, 청소년, 여성 등 특별배려 대상에 대한 대상별 지원 현황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전문위원	김정덕	입법조사관	이태기
------	-----	-------	-----

[참고자료] 출처: 행정국 제출자료

[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수 : 6,530명('23.5.31 기준)]

(단위 : 명)

구 분	'23.5.31	'20.1.1	'19.1.1	'18.1.1	'17.1.1
서울시	6,530	7,092	7,020	6,966	6,905
비율(%)	20.8	22.8	23.4	24	24.7
전 국	31,333	31,003	29,950	29,061	27,847

※ 서울시가 전국의 20.8%로 경기도 35.0%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며 서울거주 비율은 매년 소폭 감소추세임.

('23.5.31. 기준)

연 번	시도명	남	여	계	비율
		계	7,983명	23,350명	31,333명
1	경기	2,783명	8,170명	10,953명	35.0%
2	서울	2,046명	4,484명	6,530명	20.8%
3	인천	785명	2,119명	2,904명	9.3%
4	충남	352명	1,342명	1,694명	5.4%
5	충북	275명	1,104명	1,379명	4.4%
6	경북	233명	914명	1,147명	3.7%
7	경남	236명	834명	1,070명	3.4%
8	강원	224명	694명	918명	2.9%
9	부산	217명	658명	875명	2.8%
10	전남	146명	518명	664명	2.1%
11	대구	127명	503명	630명	2.0%
12	대전	123명	457명	580명	1.9%
13	광주	120명	418명	538명	1.7%
14	전북	113명	422명	535명	1.7%
15	울산	118명	341명	459명	1.5%
16	제주	77명	279명	356명	1.1%
17	세종특별자치시	8명	93명	101명	0.3%

[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도]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호 요청 및 국내이송 (해외공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호 요청 시 외교부, 관계 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•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•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 입국 지원
<p>국내 입국</p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사 및 임시보호 조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국 후 국정원이 보호결정 여부를 위한 조사 및 긴급한 치료 등 임시보호조치 실시 •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호결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『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』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결정 • 세대 단위 보호결정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하나원 정착준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회적응교육 (12주, 400시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심리안정, 우리사회 이해 증진, 진로지도 상담, 기초 직업훈련 • 초기정착지원 : 가족관계등록부 창설, LH·SH 주거주선, 정착금·장려금지원 등
<p>거주지 전입</p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거주지 보호 (5년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회적 안전망 편입 (생계·의료급여 지급) • 취업지원 : 고용지원금, 무료 직업훈련, 자격인정 등 • 교육지원 :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• 보호담당관 : 거주지·취업·신변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민간참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 • 지역적응센터 지정·운영 ※ 서울시 4개 센터 (동, 서, 남, 북) • 정착도우미제도 : 민간자원봉사자 연계 등 •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80명(정원 기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합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 등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

[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간담회 개요]

출처: 행정국 제출자료 편집

- 일시 : '23. 3. 29.(수) 15:00 ~ 17:00 / 장소 :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 1

□ **간담회 결과** (주요 건의사항)

- **(교육)** 부모·자녀 소통, 법률용어 등 공공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교육 지원
- **(돌봄)** 정신적 트라우마 치유 및 미혼모·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
- **(취업)** 市 산하기관 등에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취업 강화 요청
- **(홍보)** 북한이탈주민 및 단체 대상 市 정책 홍보·공유 요청
- **(병역 등 기타)** 제3국 자녀의 병역문제 대책 및 폭넓은 정책지원 등

연번	단체명	분야	주요 의견 및 제안사항
1	글로벌교육센터 (FSI)	교육	○ 한국생활에 쓰이는 영어 등 북한이탈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영어교육 필요
		돌봄	○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 도움 주는 사업 필요
2	나우 (NAUH)	기타협력	○ 서로 격려하면서 이 자리를 통해 더 발전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이 되기를 희망
3	느헤미야 코리아	기타협력	○ 학생을 위한 교육이 중요, 서울시나 통일부와 함께 서로 의논하고 방향제시 해 주기 바람
4	대한자유인 연합회	돌봄	○ 미혼모 및 한부모 가정 에 대한 지원 강화
		교육	○ 성장 배경 차이로 인한 부모와 자녀간 감정 소통 교육 요청
		병역	○ 제3국 자녀의 군 문제 대책 필요 (국적 취득시 즉시 군입대로 한국어도 미숙한 채 입대하여 부적응 발생)
5	북한민주화 위원회	인권	○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문제(고독사 사건 등) 해결에 관-민 협력 요청
6	북한이탈주민 문화복지진흥원	문화	○ 탈북민 및 2세 자녀 대상 문화복지 강화 요청(kpop, 뮤지컬 관람 등)
7	비욘드더 바운더리	취업	○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의 대기업 인턴근무(방학기간) 및 취직 요청(1~2명)
8	세계자유북한인 총연맹	기타협력	○ 북한이탈주민(단체)에 대해 타시도 대비 폭넓은 지원 방안 마련
9	송의동지회	기타협력	○ 북한이탈주민과 소통이 용이한 지원단체의 공모사업 참여 기회 확대
		홍보	○ 서울시 정책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적극적인 정보 제공
10	우리 온	홍보	○ 온라인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사업을 홍보하고 있음. 홍보활성화가 필요
11	큰사랑	돌봄	○ 전문가 연계-지원을 통해 트라우마 해소 등 정신건강 지원 강화
12	탈북난민 인권연합	병역	○ 제3국 자녀의 국적취득시 사회적응기간 필요로 병역이행 관련 대책 필요
		기타협력	○ 음식나눔 등 자원봉사시 장소 등 협조 요청(동대문 “밥퍼” 사례)
13	탈북자동지회	교육	○ 하나원에서 성공사례만 교육하고 있는데, 한국생활에 쓰이는 용어 의미, 공공정책 등 적응에 필요한 정보전달 교육 필요
		취업	○ 서울시 산하기관에 북한이탈주민 특채 요청
		기타협력	○ 하나재단과 중복되는 사업을 최소화 하고, 맞춤형 지원 서비스 요청
14	평화나눔재단	돌봄	○ 서울시에서 내년 공모사업 에 인권유린 당한 북한이탈주민의 트라우마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교육사업 요청

[2023년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예산 편성 현황]

(단위 : 천원)

구 분	'23년 예산액	비 고
총 계	2,142,300	
소 계	749,000	시비
▶서울시민 길라잡이 행사, 서울생활 안내서 제작 등	46,000	
▶기초생활 물품지원	40,000	
▶의료지원(종합건강검진, 치과 및 일반질환 치료)	326,000	
▶돌봄지원(가정돌봄, 마음돌봄, 긴급돌봄)	118,000	
▶가정지원(학습지원, 가족통합 프로그램 등)	219,000	
소 계	1,393,300	국비
▶지역적응센터(4개) 운영	1,309,000	
▶지역협의회 운영	84,300	